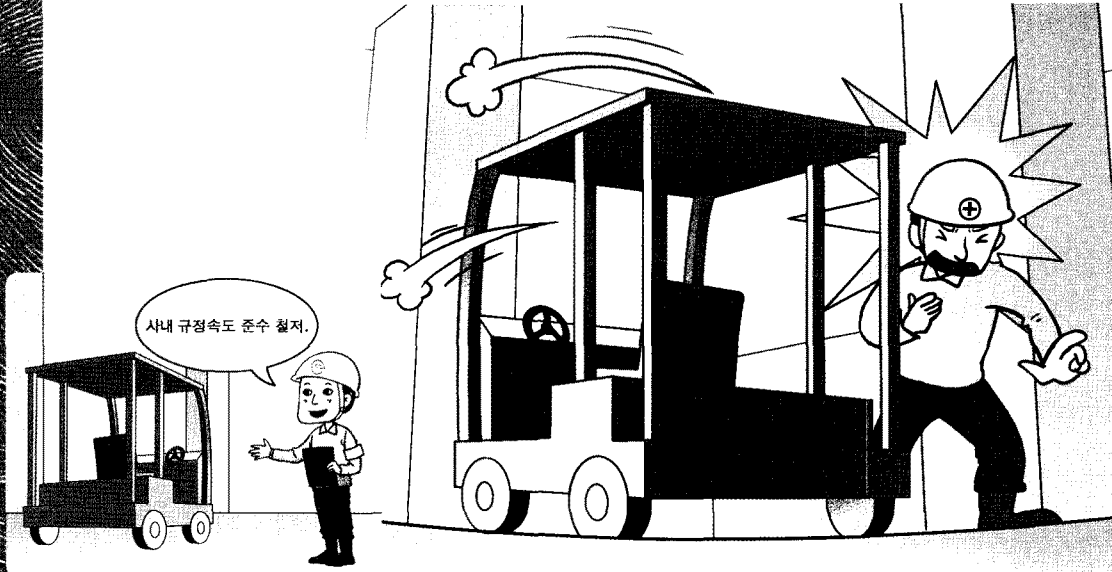


전동차와 A30기동사이에 협착

*업종 : 수송용기계기구 | 생산품 : 부품운반 | 기인물 : 전동차 | 재해유형 : 협착 |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1. 재해발생개요

의장공장에서 재해자가 공BOX 회수하기 위하여 회수장에 진입코저 좌회전 하다 미끄러져 공BOX 회수DIE에 충돌, 후진기어를 넣고 손으로 엑셀페달을 누르는 순간 전동차가 우측으로 틀리면서 재해자와 충돌 재해자가 기동과 전동차 사이에 협착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공BOX회수장에 진입하고자 좌회전하다가 과속으로 전동차가 미끄러져 공BOX 회수 DIE에 충돌하자 피재자가 내려 육안으로 확인한 후 후진시키기 위해 손으로 가속페달을 밟는 순간 재해자가 A30 기동과 전동차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 발생원인

- (1) 전동차 규정속도 위반
- (2) 손으로 가속페달 조작
- (3) 운전미숙 및 안전수칙 미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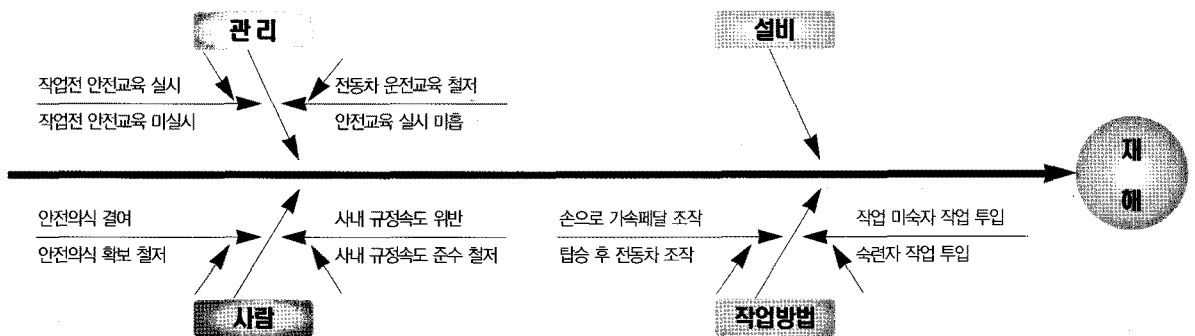
나. 예방대책

- (1) 사내규정속도(10km/hr) 이하로 운행
- (2) 전동차에 탑승한 후 조작
- (3) 사내 운전교육 실시 및 운전자격증 발급

4. 범위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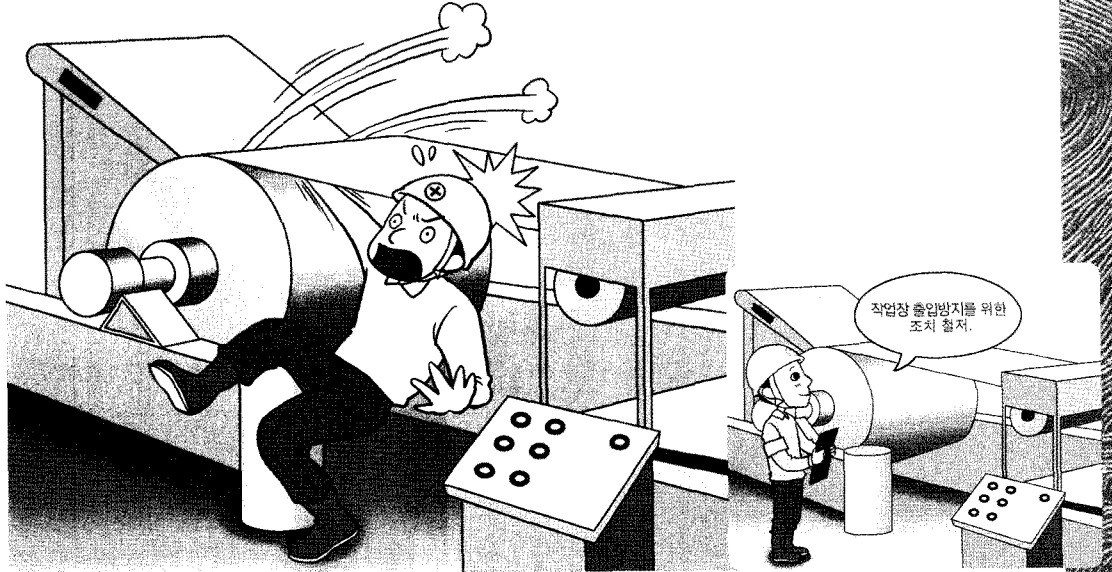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슬리터 작업중 철판 코일에 협착

* 업종 : 제1차 금속산업 | 생산품 : 철판코일 | 기인물 : 철판 코일 | 재해유형 : 협착 |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1. 재해발생개요

슬리터 M/C 2호기에서 철판 코일을 되감는 Recoiler에서 감겨지고 있는 철판 코일에 피재자가 무의식적으로 손을 대어 피재자의 손이 Recoiler 말려들어가 협착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담당자가 Tension 확인하고 작업이 종료된 상태에서 정상속도로 가동되는 Recoiler에 피재자가 다시 철판코일 Tension 확인을 하려다 슬리터링 되어 되감기는 Recoiler에서 철판코일 철판 코일이 감겨지는 위험점에 손을 대어 협착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 발생원인

- (1) 담당 작업자와의 작업자가 위험장소에 접근
- (2) Tension 확인용 수공구 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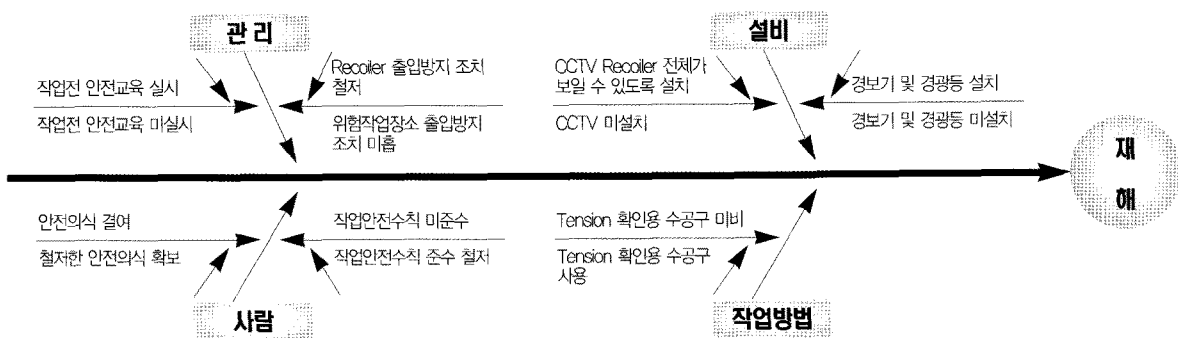
- (3) 작업시작전 안전교육미흡

나. 예방대책

- (1) 담당 작업자와 위험장소 접근 금지
- (2) Tension 확인용 수공구 비치
- (3) 작업시작전 안전교육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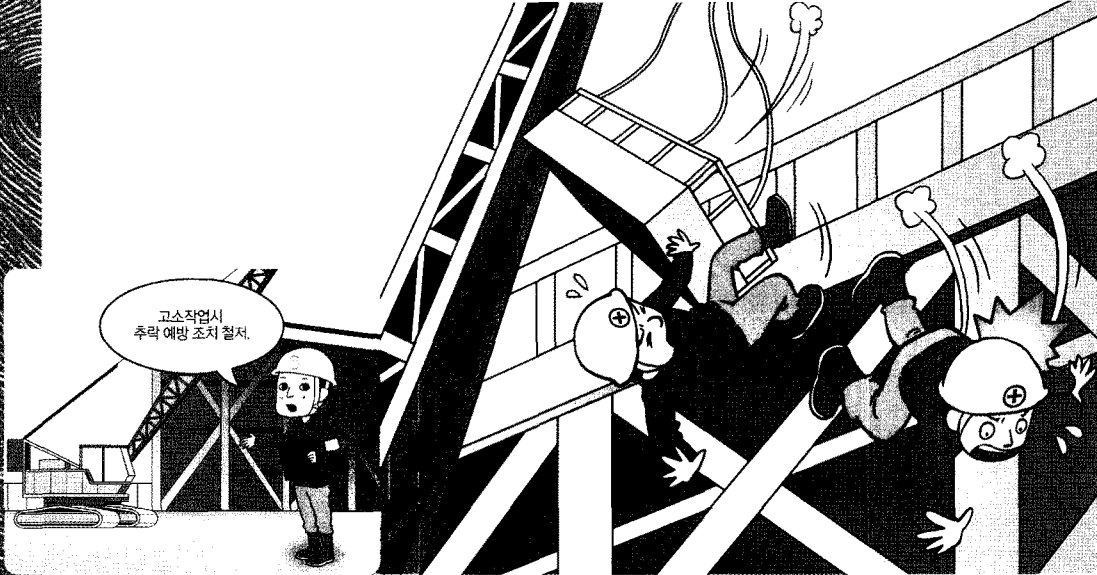
4. 범위반사항

-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족장설치 작업 후 지상으로 내려오던 중 추락

*업종 : 선박건조수리업 | 생산품 : 도장/족장설치 | 기인물 : 바다 | 재해유형 : 추락 | 피해정도 인적 사망 2명, 부상 3명



1. 재해발생개요

해양사업부 Jacket상부 족장 설치 작업 후 지상으로 내려오기 위해 225톤 크레인에 기설치 되어있는 바스켓에 올라타 내려오는 과정에서 핸드 레일 및 족장에 충돌되어 바스켓이 기울어지면서 추락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족장 설치 작업을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오기 위해 크로라 크레인(225톤)에 기 설치된 바스켓에 올라타 내려오던 중 갑자기 바스켓이 급 하강 하면서 핸드 레일 및 족장에 충돌되어 바스켓이 기울어지면서 안전대를 미착용한 작업자 2명은 바닥으로 추락하여(높이 약 39m) 사망하고, 족장과 기자재들과 충돌하면서 부상한 재해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 발생원인

- (1)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간의 신호체계 미흡
- (2) 고소작업시 추락 예방 조치 미흡
- (3) 안전담당자 당해 작업 지휘 감독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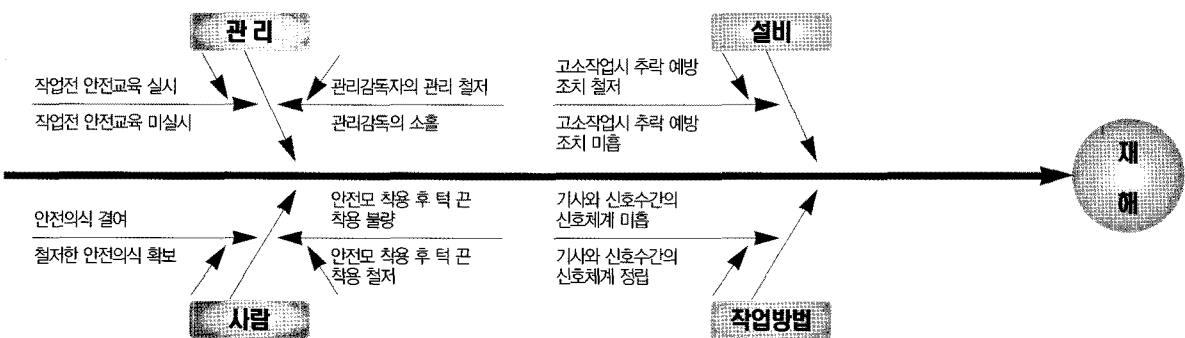
나. 예방대책

- (1)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간의 연락체계 정립
- (2) 고소작업 시 추락예방조치 철저 시행
- (3) 담당자 당해 작업 지휘 감독 철저

4. 범위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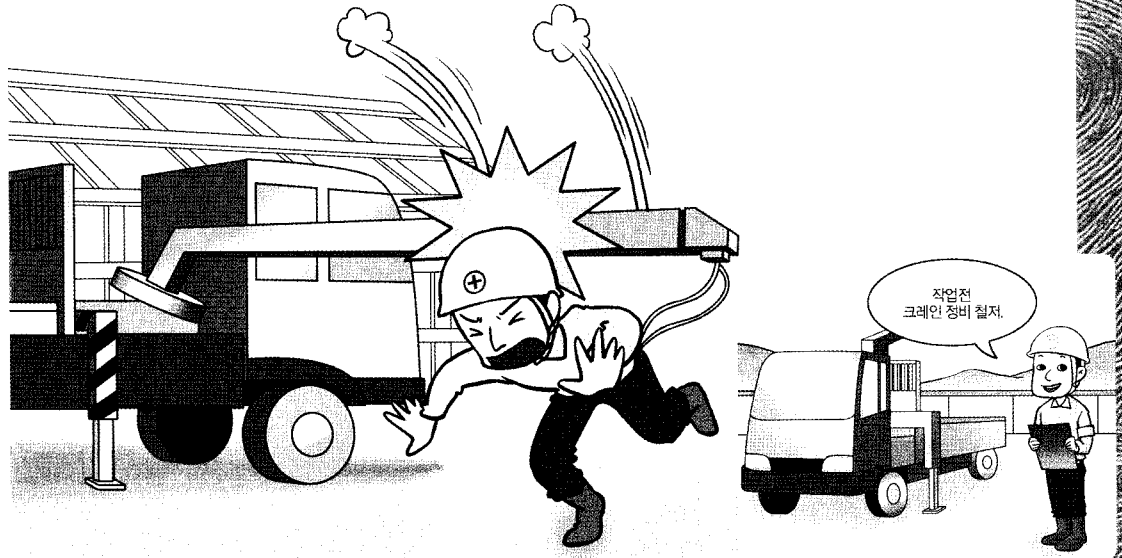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카고크레인의 컬럼 하단부 파단으로 인한 협착

* 업종 : 건설업 | 생산품 : 지붕트러스 해체 | 기인물 : 붕대 | 재해유형 : 협착 |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1. 재해발생개요

카고크레인(5ton)을 사용하여 지상에서 날개로 1개씩 분리된 지붕트러스(50kg)를 보관장소로 옮기던 중 카고크레인의 컬럼 하단부가 파손되면서 연장된 붕대(약 15m)가 트러스 해체, 보관 작업을 도와주던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기존 건물의 지붕트러스 해체작업 중 동료작업자 3명, 카고크레인 1대가 현장에 투입되어 기존 철구조물(지붕트러스 등)의 절단, 해체작업을 시작, 카고크레인(5ton)을 사용하여 지상에서 날개로 분리된 지붕트러스(50kg)를 보관장소로 옮기던 중 컬럼 하단부가 파손되면서 붕대가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 발생원인

- (1) 베이스부 일면의 크랙 발생
- (2) 중량물 이동 반경에 작업자 출입
- (3) 관리감독 소홀

나. 예방대책

- (1) 작업전 작업차량 점검 철저
- (2) 중량물 이동 반경 내 작업자 출입 금지
- (3) 관리감독 철저

4. 범위반사항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